2019년도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6. 13.(목요일), 10:0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8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71건(안건번호 제2019-48720호~4999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8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위치한 네이버 밴드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네이버 밴드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48720호~4999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071건임
  안건번호 제2019-48720호 게시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링크로 연결된 불법복제물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링크로 연결되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스트리밍으로 바로 감상할 수도 있음
  (영상 상단의 'MBC' 로고를 제시하면서)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최근 MBC에서 방영된 것으로 제1화부터 15화까지 이용 가능함
  안건번호 제2019-48721호~48727호는 보호원이 모바일 웹하드를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기기를 통해 접속하여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스트리밍으로도 이용 가능함

- A 위원 : 우선 MBC에서 방영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 안건에 관해 살펴보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은 의견임

- C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8720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B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 중 PC버전 웹하드 사이트의 캡쳐 화면을 가리키며)PC버전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이콘에 휴대폰 표시가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 서비스 별로 모바일 서비스 표시방법은 다르지만,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맞다고 답변함

- C 위원 : PC버전 웹하드 사이트에서 삭제되더라도 모바일 버전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삭제됐는데 모바일 버전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업로더가 게시물을 웹하드에 올리면 PC버전에 업로드가 되고, 해상도 조정 등 인코딩을 거쳐 모바일용 서버에 별도로 저장되는데, 그 결과 PC버전 웹하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 삭제가 되더라도 모바일 버전에서는 계속 이용 가능함

- C 위원 : 동일 저작물인데 PC버전과 모바일버전에 올라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심의하여 별도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 C 위원 : 별건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웹하드에서 운영하는 DB저장소가 있고 업로더가 게시물을 올리면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인데 PC버전과 모바일버전 저장소가 다른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DB는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을 구분하여 서비스하는 것임
  예를 들어 PC버전 웹하드에 시정권고하면 DB에서 PC버전은 서비스가 안 되도록 차단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계속 이용 가능함

- A 위원 :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DB에 있는 파일은 동일하고 접속방법이 PC인지 모바일인지만 다른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PC버전은 풀해상도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시청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시청할 수 있게 인코딩함
  모바일에서 시청할 수 있게 여러 해상도로 인코딩을 해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용자의 기기에 최적화된 해상도의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내야 이용자가 감상할 수 있음
PC버전과 동일한 영상을 모바일에서 제공하면 버퍼링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움

- A 위원 : 동일한 파일의 원본은 PC버전에서 볼 수 있고 모바일버전은 인코딩해서 스트리밍으로 보내는 방식인지 질의함

- B 위원 : 맞다고 답변함

- C 위원 : 별건의 게시물이라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간단히 정리하자면 불법복제물 파일이 2개고, 게시물 주소도 서로 다름

- A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이견 없음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8721호~48727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48728호~49994호는 모두 단순복제한 만화, 출판,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게임, 영상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이른바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8728~49994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48720호~49994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2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